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9. 1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9월 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9월 8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

(2015. 9. 1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전환되는 직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반영 및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일부 개정(안 제4조제8호)
- 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 (부칙 제2조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- 법체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(2013.12.12 시행) 되어 “계약직공무원”이 “임기제공무원”으로 전환되는 등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타 중앙부처 기관장 명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 하려는 것임.

- 이에 따라, “임기제공무원”의 종류를 “일반임기제공무원은” 1)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 2)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정의하였음.
- 기타, 정부조직법 개정(2014.11.19)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(행정자치부장관)이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, 법령 띄어쓰기, 법령명에 낫표(「)를 첨부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
 2)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7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 중 일부를 전환되는 직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반영 및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일부 개정
(안 제4조제8호)

나. 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 (부칙 제2조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임용령,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,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

라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15. 6. 18 ~ 7. 08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에 의한다”를 “각 호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”를 “인사혁신처장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”을 “「공용차량 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7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로,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인사혁신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은 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“공무원임용령”은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으로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전임계약직공무원”을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제목 “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”를 “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、 ② (생 략)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、월지급한 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<u>구청 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 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, 공무원여비규정을 준 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<u>각호에 의한 다.</u></p> <p>1.、2. (생 략) 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<u>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하여</u>”는 준용하지 아 니한다. 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<u>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</u>”은 “<u>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</u>”로 본다. 5. 제24조제5항 중 “<u>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</u>”은 “<u>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</u>”으로 본다. 6. (생 략)</p>	<p>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、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 다)</u>--.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각 호에 따른 다.</u></p> <p>1.、2. (현행과 같음) 3.-----<u>인사혁신처 장관</u>----- -. 4.-----“<u>「공용차량 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</u>”은 “<u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</u>”--. 5.-----“<u>「국가공무원 법」 제71조제2항</u>”은 “<u>「지방공 무원법」 제63조제2항</u>”--. 6. (현행과 같음)</p>

7.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“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”으로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7. -----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-----“인사혁신처장 -----
-----“인사혁신처장 -----
-----.

8.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”으로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본다.